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용자 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 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 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조 또는 용자지원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u></p> <p>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②(생략) <u>③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용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u></p> <p>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②(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용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1.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p>